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8~73
----------	---------

제출일자 : 2018. 10.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요구이유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하여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나. 위탁대상 사무 : 여성결혼이민자 채용 및 관리

○ 여성결혼이민자 상시고용 : 연간 5~ 10명

○ 근무조건 : 근로기준법 준수하여 근로계약 체결

○ 근무내용 : 결혼이주여성 능력에 따라 다양한 업무 수행

○ 월 급여 : 1인당 월 근로임금 50만원 이내 채용 장려금 지급(위탁금), 그 외 임금은 수탁기관 부담

다. 수탁기관 가격기준 : 4대 보험 가입하는 기업체 또는 법인

○ 연중 5~10명 정도의 여성결혼이민자 상시채용과 관리가 가능한 기관

라. 위탁방법 : 공개모집

마.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창출사업은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 있음

- 여성결혼이민자 능력에 맞는 다양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기업 또는 법인에 민간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나.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20조

다. 향후계획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18. 10월 중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2018. 10월 ~ 11월 중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결정(9명 이하)
- 위.수탁 협약체결 : 2018. 11월 중
- 위탁기간 : 2019. 1. 1. ~ 2020. 12. 31. / 2년간

라. 소요예산

- 위탁운영비 : 연간 30,000천원

마.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위탁운영계획 : 따로 붙임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계획

-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위탁이 2018. 12. 31.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I 위탁현황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20조

○ 위탁사무 및 수탁기관 현황

위탁사무	수탁기관	대 표	위 치	업 종	비고
여성결혼이민자 고용	농업회사법인 (주)NH유통	김학두	거창군 거창읍 거합대로 3372	농산물통유	

○ 위탁기간 : 2016. 3. 2. ~ 2018. 12. 31 / 2년 10개월

- 최초위탁 : 2011. 3. 2.
- 2015년 수탁기관 모집공고 : 현 수탁기관만 신청하여 재 위탁

○ 운영방법 : 여성결혼이민자 5~10명을 채용, 근로임금 50%이내를 위탁금으로 보조, 그 외 임금은 수탁기관 부담

○ 여성결혼이민자 고용현황

고용분야	고용현황			비고
	2016년	2017년	2018년	
사과선별 작업	8명	9명	8명	

○ 위 탁 금 : 30,000천원 / 군비

II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고 : 2018. 10. 22. ~ 10. 31. / 10일간
- 수탁기관 신청 접수 : 2018. 11. 1. ~ 11. 5. / 5일간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구성 : 인원 6명 이상 9명 이하 / 위원장 1인 포함
 - 심의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2018. 11월중
 - 신청 기관이 2개 기관 이하일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
 - 선정기준 :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장비·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지역 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검토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탁기간 : 2019. 1. 1. ~ 2020. 12. 31. / 2년간
- 위탁사무 : 여성결혼이민자 고용
 - 여성결혼이민자 공개채용, 근로계약 체결, 상시고용

III

행정사항

- 수탁기관 공고 : 2018. 10. 22. ~ 10. 31. / 10일간
- 수탁기관 신청 : 2018. 11. 1. ~ 11. 5. / 5일간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2018. 11. 15. 예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18. 11. 30.
- 협약서 공증 : 2018. 12. 3.
- 위탁기간 : 2019. 1. 1. ~ 2020. 12. 31. / 2년간

관계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3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군수는 군민과 결혼이민자가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서비스 기관 등을 소개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 등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